



## 國際動向

### ◎ 開發途上國과 파리條約

오랜歴史를 갖고 있는 工業所  
有權保護 파리條約의 改正을企  
圖하는 加盟國政府 專門家會議  
가 6月중에 열릴 예정이다.

昨年末 주베르에 이어 두번째  
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先進國  
과 開發途上國이 공업소유권에  
대하여 利害가 대립되는 문제를  
해결하려는 데 있다.

현재 全世界가 보유하고 있는  
特許는 350萬件에 달하고 있으나  
이 가운데 개발도상국 국민이 갖  
고 있는 특허는 겨우 1% 정도이  
며 開途國에서 外國人に 許與한  
특허의 95%가 產業에 이용되지  
않고 있어 파리條約이 技術移轉  
에 寄與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.

開途國들의 이에 대한 불만이  
차츰 고개를 들게 되자 작년 말경  
加盟國政府 專門家들이 모여雙  
方의 의견을 나누었으나 先·後  
進國間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  
었다.

특히 蘇聯圈에서는 發明者證制度  
와 特許權에 대한 條約規定의  
限界 등을 들고 나왔으나 계속  
검토키로 했다. 技術移轉에 관해  
선 開途國들로부터 外國인이 보  
유하는 특허의 不實施에 대한 문  
제와 權利의 濫用防止가 지적되  
었다. 다시 말해서 현행 제도로는  
선진국 그룹의 利益保障에 초점  
이 두어져 있으므로 開途國들의  
주장이 긍정된다는 것이다.

그 뿐 아니라 開途國에서는 強  
制實施의 強化, 不實施期間의 短  
縮, 料金의 優待措處 등도 주장  
되고 있는데 반하여 先進國들은  
특허의 審查, 實施上의 難點 등  
을 들어 反論하고 있다.

6월에 열린 회의에서도 대개  
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提起된 것  
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  
로 開途國 중심의 國際特許條約  
機構設置問題가 發論될 가능성도  
없지 않다.

### ◎ 덴마아크, 特許法 改正推進

덴마아크에서는 유럽 特許機構  
와 EEC 特許條約의 발효를 예  
상하고 이 기구들의 特許法 정신  
에 호응하고자 自國 特許法을 개  
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.

대체로 1977年을 施行의 時點  
으로 추진하고 있는 改正要旨는  
다음과 같다.

1. 藥品, 化合物 自體 食料品  
및 이들 제법에 대하여 特許  
性의 許與
2. 出願의 未公開 덴마아크特  
許出願은 自明에 관한 것이  
아니라, 新規性(novelty)에  
관한 것만 先行技術로서 취  
급
3. 追加特許의 폐지
4. 特許의 유효기간을 20년(現  
行은 出願日부터 17년으로  
연장하려는 것 등이다.)

### ◎ 아르헨티나, 國際分類 併用

아르헨티나는 모든 特許出願에  
서 아르헨티나 特許分類와 國際  
分類를 併行하기 시작했다.

이제까지는 國내분류만을 사용  
하여 왔으나 特許廳이 새 制度를  
체용한 주요한 이유는 國際機構  
와의 호흡을 같이 하려는 것이다.

### ◎ 니파라구아, 商標制度改正

니파라구아는 中美條約(Central  
American Convention)에의 가입  
에 따라 1975年 9月 17日부터 同  
條約制度에 따르기로 했다.

따라서 니파라구아의 商標法도  
改正되어 條約國 이외의 나라로  
부터의 商標出願은 自國의 등록  
상표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며,  
登錄證明書 또는 인증된 宣誓書  
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.

또한 종래에 없던 異議申請制  
度가 도입되어 出願公告公報에  
공고된 날로부터 2個月의 異議申  
請期間으로 정하였으며 商標分類  
는 42類로 나누었다.

### ◎ 파푸아뉴우기니, 特許制度 失效

파푸아뉴우기니는 1975年 9月  
16일에 독립하므로서 이때까지  
적용하던 오스트레일리아 特許·  
意匠·商標 등 工業所有權制度는  
무효가 되었다.

따라서 이들 법에 代替할 自主  
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新規出  
願制度는 없고 이미 사용하고 있  
는 商標만은 계속 보존되고 있다.

